

보장내용

기본 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지급금액
해외여행중 상해 사망/후유장애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전액후유장해시 장애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해외여행중 상해 소득보상금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해당 보험가입금액을 10개월간 지급	보험가입금액을 매월 10개월동안 지급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해외여행 도중에 생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 10,000원)
해외여행중 휴대손해(분실제외)	해외여행 중에 휴대품의 도난,파손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 수리비나 대체비 등 실제손해액 지급 (자기부담금 : 10,000원) 보험의 목적 1개 또는 1조, 1상에 대한 지급 보험금은 20만원 한도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소환비용	-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 피보험자가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피보험자가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상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인X14일한도), 이송비용,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따른 제입비(10만원 한도)를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
해외여행중 항공기 납치	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 한도

특별약관

담보명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지급금액
상해 의료비	해외 의료비_상해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로 발생한 금액 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다만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
	국내발생 상해입원 의료실비_해외여행 - 선택형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를 합한 금액을 보장(단,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10%와 비급여의 20%가 200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 보장)
	국내발생 상해통원 의료실비(외래)_해외여행 - 선택형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외래)치료로 발생한 금액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 금액(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장
	국내발생 상해통원 의료실비(처방조제)_해외여행 - 선택형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 받은 금액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장
질병 의료비	해외 의료비_질병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로 발생한 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다만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
	국내발생 질병입원 의료실비_해외여행 - 선택형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를 합한 금액을 보장(단,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10%와 비급여의 20%가 200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 보장)
	국내발생 질병통원 의료실비(외래)_해외여행 - 선택형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외래)치료로 발생한 금액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 금액(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장
	국내발생 질병통원 의료실비(처방조제)_해외여행 - 선택형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 받은 금액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장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50회 한도로 350만원 한도에서 보장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250만원 한도에서 보장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보장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	보험기간 중 아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손해를 보상함. - 하나의 항공편을 기준으로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피보험자가 목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출발 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 연결 항공편이 결항되어 출발 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 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각으로부터 6시간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도착하는 경우 -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주거지는 제외합니다)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하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수하물은 영구적으로 손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 및 간식, 전화통화 비용 -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탑승하기 위해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및 해당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 - 위탁수하물 지연의 경우 비상의복과 생활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위탁수하물 손실의 경우 비상의복과 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 예정된 도착지(주거지는 제외합니다)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아래의 사유로 여행일정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 -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귀국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일정을 변경하여 귀국함으로써 미리 지급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미리 지급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
해외여행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중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중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애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보험가입금액의 전액

보험금 지급제한

-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사유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과 발생시 보상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증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